



공증인가  
법무법인 비 전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[별지 제33호서식]
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19년 제 35675호

인 증 서

# 발기인 총 회의 사 록

2019년 11월 20일 시간은 12 시 00 분 주식회사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.

발기인 총 수	2 명	이의 인수주식총수	600,000 주
출석발기인수	2 명	이의 인수주식수	600,000 주



발기인 대표 정 현 섭은 발기인 전원이 상법 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

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물은 즉,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.

## 제2호 의안 주금납입의 건

의장은 발기인대표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를 농협은행 여의도문화지점으로 하여, 각 발기인들이 2019년 11월 20일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 전부를 납입하도록 정하고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가결하다.

##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이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,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사 내 이 사 박 영 희(750103-2XXXXXX)

기타비상무이사 박 대 규(720902-1XXX |

기타비상무이사 정 현 섭(801106-1XXXXXX |

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.

####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

의장은 감사의 선임방법을 묻은바,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. **정양섭**  
(단,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)

감사 진 형 준(730405-1XXXXX |

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.

#### 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

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 사항을 발기인 아닌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다. 잠시 후 발기인이 아닌 **이사 및 감사**는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한다.

#### 제6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

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 **에**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바 전원일치로써 다음과 같이 본점 설치장소를 결정한다.

본 점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 
13층(여의도동,농협재단빌딩)

####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승인의 건

의장은 이사의 보수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일백만(1,000,000)원 이내에서 하기로 승인한다.

**제8호 의안**    감사 보수한도승인의 건

의장은 감사의 보수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감사의 보수는 1인 당 월 일백만(1,000,000)원 이내에서 하기로 승인하다.

**제9호 의안**    대표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 바,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대표이사    박    영    희(750103-2XXXX)



위 선출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(시간은    12    시    30    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.



2019년 11월 20일

**주식회사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

의장 겸 발기인대표    정    현    섭



발기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박    대    규



# 조사보고서

본인은 2019년 11월 20일 본 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바 발기인이 아닌 이사및 감사는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.

##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

1.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보통주식 600,000주로 2019년 11월 20일 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
2. 각주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까지 그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었음은 농협은행 여의도문화지점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.
3.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,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,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,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.
4.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.

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.

2019년 11월 20일

주식회사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조사보고자 겸 사내이사

박 영 희

조사보고자 겸 감 사

진 형 준




공증인가  
법무법인 비 전

[별지 제37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19 년	제 35675호
<b>인 증</b>	
위 주식회사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----- 의	
2019년 11월 20일자 발기인총회 -----	
의사록에 대하여 의결권자 발기인 겸 주주 정현섭, 박대규 들의 각 대리인 전병선	
은 -----	
-----	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, -----	
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 -----	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	
을 확인 하였다. -----	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각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----- 에 의하여	
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	
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-----	
2019년 11월 2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	
<b>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</b>	
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	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	
공증담당변호사 <b>박영만</b> 인	
아	래 
1. 공증촉탁서,	2. 진술서, 3. 확인서, 4. 주주명부, -----
5. 위임장,	6. 인감증명서 -----